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0월 21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2년 10월 6일
- 나. 제안자: 강선영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1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0.21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강선영 의원)

□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
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되어
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(안 제10조)
- 나.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 정리 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
- 2)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4조의5, 제4조의6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해당부서: 복지정책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2. 10. 6. ~ 10. 12.) 결과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개정취지

-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이 마련(2022. 6. 22. 시행)됨에 따라,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명시하고, 그 구성[동법 시행령 제4조의5 준용] 및 운영[동법시행령 제4조의6 준용]에 관한 근거를 제시함

※ **심의사항**

1.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(2022. 6. 22.)에 따라, 우리 구 조례에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
-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, 특히 우리 구¹⁾는 임대주택 및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 지역이 많고 복지 수요가 높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인식하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,
- 이에 2020년 11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바 있음 [참고: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현황]

1) 강서구 기초수급자 현황

[출처: 2021 강서구 구정백서, 2020. 12. 31. 기준]

총 계		생계급여		의료급여		주거급여		교육급여	
가구	인원	가구	인원	가구	인원	가구	인원	가구	인원
19,234	27,490	13,363	17,864	14,418	19,157	18,515	26,463	1,804	2,613

※ 기초생활수급자 총계는 중복 인원 제외한 것임

- 따라서 이번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다만 개정된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의 단서조항을 보면,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2) 제5조 (위원회 설치)에 따르면 ‘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근거,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설치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 총괄부서인 협치분권과의 위원회 신설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2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위원회 설치)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,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
 2.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
 3. 위원의 구성 및 임기
 4. 존속기한 및 예산 등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참고

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현황 [전액구비]

소관부서	해당시설	산출내역	금액(천원)	비고
복지정책과	종합사회복지관	120,000원x244명	29,280	
	기초푸드뱅크·마켓운영	120,000원x5명	600	
생활보장과	지역자활센터	120,000원x21명	2,520	
아동청소년과	아동복지시설	120,000원x61명	7,320	
	청소년상담복지센터	120,000원x14명	1,680	
	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	120,000원x3명	360	
	키움센터	120,000원x17명	2,040	
장애인복지과	장애인복지시설	120,000원x410명	49,200	
	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	120,000원x16명	1,920	
가족정책과	건강가정지원센터	120,000원x42명	5,040	
어르신복지과	강서50플러스센터	120,000원x8명	960	
	어르신복지시설	120,000원x73명	8,760	
	강서시니어클럽	120,000원x5명	600	
합 계			110,280	

※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: 연120,000원(1명×10,000원×12월)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

제4조의2(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“중앙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
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4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

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4조의3(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4조의4(중앙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
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4조의2,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의5(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 - 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 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4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4조의6(지역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, 해임·해촉,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,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중앙위원회”는 “지역위원회”로,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은 “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본다.

- ② 제4조의5,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